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2022.09.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상기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	본인	■ 당사 현장접수처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)
	○		신분증	본인	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“상세”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■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공급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필수 제출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“상세”로 발급)
다자녀 특별 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■ 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‘전체 포함’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■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■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■ 입양의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(또는 배우자)	■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■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 3 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/자녀	■ 본인: 만 19세 전에 출산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.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■ 자녀: 만 18세인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.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 입증 서류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	본인	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■ 근로자는 아니나, 업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명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■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,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※ 공급신청자의 해외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동일 국가 체류여부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■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 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부적격 당첨 동보를 받은 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 ■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■ 소형·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■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■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인감도장	본인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 -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‘본인 발급분’에 한함. (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)
	○		위임장	본인	■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